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○○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집행원칙 미준수

기 관 명 충청남도 보령시

내 용

충청남도 보령시 ○○기술센터에서는 수출국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품질기준 설정 및 해외 마케팅을 통한 우리식량작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‘2016년 ○○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’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2016. 1. 1.시행)」 제5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(이하 "사업자등록증소지자"라 한다)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,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‘2016년 ○○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(사업비 142,030천원)’의 세부사업인 중국쌀 홍보판촉(사업비 40,000천원/보조금 11,667천원, 자부담 28,333천원) 행사를 추진하면서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에게 사업계약을 하여야 함에도,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아닌 중국 ○○○무역유한공사와 보조사업자(○○○○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)

가 중국쌀 홍보관측 행사를 위탁 수의계약(사업비 40,000천원)하여, 중국에서 ○
○○○ 쌀 중국수출 홍보관측 행사를(2016. 4. 7.~4. 10.) 추진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보령시장은

[주의]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